

‘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정책

정 책 제 안 서

2024.11.12

제10기 서대문청소년의회

‘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정책

정 책 제 안 서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제10기 서대문청소년의회 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수민, 부위원장 차하린 외 11명

나. 상정 근거 : 상임위원회별 토의 및 동의 절차를 통한 상정

2. 제안이유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1) 주차장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있지만 해당 구역만 피해 불법 주차하는 양측족들로 인해 장애인주차구역이 실효성을 갖지 못함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후 건물까지의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많음
- 3) 여러 조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항들이 있으나 흩어져있어, 경기도, 화성시의 사례처럼 하나의 통합적인 조례로 체계적인 관리 필요함

3. 주요내용

○ 세부 정책과제

1) 설치만 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 설치되었을 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작 장애인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주차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터 건물까지는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주차장에서 내리더라도 건물로 이동하기 어려워 장애인 입장에서 건물 이용할 수 없음. 따라서 주차장부터 시설까지도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필요함

2)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서대문구의 경우에도 여러 조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용이 있지만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움. 따라서 경기도나 화성시의 조례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함

*사진 뒷면 첨부

○ 기대효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차량 수 감소
- 장애인들의 보다 편리하고 실효성 있는 주차구역 이용 가능

4. 참고사항

○ 청소년의회 멘토 서대문구의원 주이삭 의원님과

이동수 퍼실리테이터가 주신 조언과 피드백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안) ○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서대문구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한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유도표 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유도표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 ①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둔다.

②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 개선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제7조(지킴이의 운영) ① 지킴이는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킴이센터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 구청장은 지킴이로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실효성 없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

